



企業經營과 稅金講話 完

企業經營의 合理와 効能을 為해 알기

쉽게 읽어가는 稅金特講을 連載한다.

節稅經營이란?

資本轉入이란?

環給法이란?

李 文 宰

慶熙大 經營大學院 教授

第8章 稅務經營管理

IV. 資本調達의 稅務政策

1. 自己資本의 負債化

企業의 資本調達 方法에는 自己資本 곧 增資에 의하는 경우와 他人資本 곧 借入金에 의하는 경우로兩分할 수 있다. 自己資本으로 調達하는 경우는 利益配當이 따르고 他人資本으로 調達하는 경우는 利子의 支給이 따르게 된다.

經營政策上 自己資本에 比하여 他人資本이 過大하게 되면 外部經濟事情變動에 대한 抵抗力を喪失하게 되어 企業收益力은 勿論 安全性이低下되므로 企業은 必要資本의 調達에 있어 可能한 限度內에서 自己資本의 充實을 期해야 함은 豐言을 不要하는 바이다.

그런데 稅務上으로는 配當은 利益處分이므로 損金으로 되지 않으나 他人資本에 대한 支給利子는 損金으로 取扱된다.

따라서 投下된 自己資本이 部分的으로 負債化하여 法人稅와 配當稅의 輕減이企圖되는 事例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8·3措置에 의하여 一旦은 整理되었다고 하겠으나 稅制上 이른바 僞裝私債의 可能性은 아직도 存在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서 僞裝私債라 일컫는 資本의 負債化에 따른 租稅節約의 可能성을 檢討한다면 다음과 같다.

$$A. (50,000,000 \times 3\%) \times 12月 = 18,000,000 \dots\dots$$

年間支給利子

$$B. 18,000,000 \times 40\% = 7,200,000 \dots\dots$$

支給利子에相當하는 法人稅額

C. $18,000,000 \times 20\% = 3,600,000$ …… 支給利子에
대한 丙配稅

D. $18,000,000 \times 20\% = 3,600,000$ …… 支給利子에
相當하는 甲配稅

自己資本中 5千萬원을 負債化하였고 이에 대하여
月利 3%의 利子를 支給하였다가 假定한다면 1年間
A에서 보는 利子額이 費用化함으로써 이에相當하는
法人稅額(B)이 節減된다.

그러나 反面에 支給利子에 대하여는 丙配稅가 課
稅(源泉徵收) 됨으로 C에서 보는 丙配稅額을 負擔
하여야 하기 때문에 實際로 節稅가 되는 金額은 B
- C가 될 것이다. 한편 支給利子로 費用化한 金額은
實質上의 利子配當이 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甲
配稅를 計算한다면 D와 같다. 따라서 丙配稅인 C를
負擔하여도 이는 D의 甲配稅와 相計되므로 結果的
으로 B인 法人稅를 節稅할 수 있게 된다. 從來 私
債의 出處는 不分明한 것이 通例였음으로 支給利子
額은 實質上의 配當所得임에도 綜合所得稅에도 不算
入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企業經營上으로 바람직한 일은 못되나 稅務計劃의
積極的인 手段으로 僞裝私債라 일컫는 常習이
企業社會에 慢延한 것은 위와 같은 節稅對策에서 비
못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勿論 資本調達上自己
資本의 私債化는 이와 같은 節稅를 事前에 計劃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増資에
따른 租稅負擔關係와 必要 資金의 需要期間이 比
較的 短期間일 경우 不必要時에 資本의 還給日 減
資라는 要式行爲가 따른다는 煩雜을 避避하기 위한
것이다. 곧 增資에 따른 登錄稅와 資金出處의 調査
등 一聯의 制約을 考慮한 나머지 處理가 簡便한
借入金을 擇한 경우도 있을것이라는 것이다.

어떻든 8·3措置로 僞裝私債라 일컫는 負債은 一旦은 整理가 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위와 같은
節稅經營對策은 아직도 存在하고 있다. 그것은 出處
不分明한 私債利子의 損金算入은 月利 1.5% (中小企
業은 月 2%)를 限度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超
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는自己資本의 負債化가 可
能하다는 것이 現實이다.

2. 準備金등의 資本轉入

資本增加에는 準備金등의 資本轉入과 資產再評價
에 의한 資本轉入 方法도 있다. 現金納入에 의한
實質的 增資와는 달리 準備金등의 資本轉入은 形式的
의 增資임으로 所要 資金의 調達로는 되지 않으나
資本增加에는 틀림이 없다. 準備金등의 資本轉入은 商法에 따라 行해질 수 있으며 出資者인 株主는
實際의 現金納入도 없이 準備金등이 資本에 轉入된
金額의 株式를 所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準備金등의 資本轉入에 대하여 稅法은
이를 模制配當이라 하여 配當稅를 課稅하고 있다.

現金納入이 없는 準備金등의 資本轉入을 稅制上
株主에게 配當한 것으로 보아 配當稅를 課稅하는
理由는 準備金등이 資本에 轉入됨으로서 交付받는
代價인 株式은 現金으로 配當된 것이나 同一하기
때문에 取해진 措置이다.

따라서 節稅經營計劃上에서는自己資本中 法定
資本金을 除外한 잉여金등을 資本에 轉入하는 方法
은 選擇될 수 없다.

그것은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株主로서는 配當
稅를 負擔하여야 하고 配當으로 取扱된 金額은 다
시 綜合所得에 算入되어 綜合所得稅까지 負擔하기
때문에 割餘金등을 資本轉入할 經營的 他例面上의
利點이 重要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必要가 없다
는 判斷에서이다.

여기에서 剰餘金中 5千萬원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 負擔하는 租稅가 어느 程度인지 計算으로 提
示한다면 다음과 같다.

A. $50,000,000 \times 0.4\% = 200,000$ …… 資本轉入에 따
른 登錄稅

B. $50,000,000 \times 20\% = 10,000,000$ …… 甲配稅

C. (株主 1人으로 假定함)

$$3,000,000 \times 30\% = 900,000$$

$$3,000,000 \times 50\% = 1,500,000$$

$$9,000,000 \times 55\% = 4,950,000$$

$$30,000,000 \times 60\% = 18,000,000$$

$$5,000,000 \times 65\% = 3,250,000$$

$$\hline 50,000,000 & 28,600,000 \cdots \text{綜合算出稅額}①$$

$$\begin{aligned}
 1,000,000 \times 20\% &= 200,000 \\
 4,000,000 \times 30\% &= 1,200,000 \\
 25,000,000 \times 40\% &= 10,000,000 \\
 \hline
 \text{配當額에 대한 法人稅 相當額} &\text{②} \\
 \\
 11,400,000 \times \frac{1}{2} &= 5,700,000\dots
 \end{aligned}$$

①~②-甲配稅 = 12,900,000……納付할 綜合所得稅額

割除金을 資本에 轉入할 必要性이 經營政策上 얼마만큼 強할지라도 이와같은 租稅負擔을 考慮한다면 그 選擇 與否는 自明할 것이다.

한편 資產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하여 適法하게 한 資產再評價積立金은 資本에 轉入할 必要가 있다. 資產再評價에 의한 積立金의 資本轉入에 대하여는 登錄稅와 配當稅등一切의 租稅가 免除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資產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은 再評價決定通知日로 부터 30일내에 資本轉入相當額證明書의 交付申請을 하여야 하고 同證明書를 交付받은 날로부터 1年以内에 登記節次를 履行하지 않으면 登錄稅의 免除를 아니하기 때문에 資產再評價의 경우는 節稅對策上 資本轉入을 行하는 것이 良策이라 하겠다.

3. 社債에 의한 資金調達

近來에 와서 우리 企業社會에 있어서도 社債發行에 의한 延債가 比較的 活潑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株式會社가 長期의 資金을 調達하기 위한 方法으로 資本이 不足한 企業社會의 現實情에서는 私債의 壓迫보다 여러가지 點에서 有利하고 投資家로서도 安定性과 利子受入에 대한 非課稅등 利點이 있음으로 今後 社債發行에 의한 資金 調達은 勸獎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現行 稅法에 의하면 韓國投資開發公社, 信託會社, 保險會所, 證券會社, 韓國產業銀行, 韓國開發金融株式會社등이 賣出하거나 募集을 주선한 것으로서 債還期間이 1年以上인 社債의 利子에 대하여는 非課稅로 하고 있다. 다만 留意할 것은 總發行 社債의 10%以下를 所有한 社債權者에 限하여 非課稅로 한다고 하였음으로 社債을 引受할 때에는 1人이 總

發行 社債의 10%以下로만 引受하면 된다.

이와같이 社債發行에 의하여 調達된 資金의 利子에 대하여는 一般借入金에 대한 利子의 경우와 같은丙配稅등의 課稅가 없기 때문에 企業은 源泉徵収를 할 必要가 없고 債權者로서도 丙配稅나 綜合所得稅가 모두 非課稅로 된다는 點에서 社債發行에 의한 起債가 有利하다는 것이다.

V. 資本減少의 稅務政策

資本減少를 簡略하게 減資라고도 하는데 減資는一般的으로 事業縮少를 目的으로 行해지는 것인데 때로는 過剩投資를 調節하여 特히 優先料를 消却하기 위해서 取하는 수도 있다. 減資를 할 때에는 株主總會의 特別決減을 必要로 하며 減資의 形態에도 實質的 減資와 形式的 減資가 있으며 그 方法으로는

- ① 株式金額의 減少에 의한 方法
- ② 株式數의 減少에 의한 方法 (消却併合)
- ③ 株金額 및 株式數의 減少에 의한 方法

등을 들수 있는데 會社가 減資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減資의 原因에 따라 資本의 減少額과 還給金額이 달라지는 것이다. 減資에 關聯한 課稅關係도 減資額과 還給金額의 差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減資에 關한 稅務計劃은 課稅關係의 具體的인內容을 把握한 後에 비로소 세워지게 될 것이다.

1. 株式金額의 減少에 의한 減資

株式金額의 減少에 의한 減資方法에는 切捨, 免除, 還給의 方法이 있고 相互並行하여 行해질 수도 있다. 切捨法은 株金을 還給 또는 免除하지 않고 額面上으로만 資本金을 減少시키는 方法이다. 곧 株式金額中에서 이미 納入된 部分의 一部를 株주가 損害를 보고 切捨하여 資本金을 減少시키는 方法인데 이 方法은 會社가 損失補填을 위하여 減資하는 경우에 主로 使用된다.

切捨法에 의한 減資는 株式金額과 同額의 資本金 減少가 있을 뿐이므로 課稅關係는 發生하지 않는다.

免除法은 未納入 株金의 一部 또는 全部의 納入을 免除시켜 資本을 減少하는 方法인데 未納入 資本制가 없는 現行 商法下에서는 適用이 없다.

還給法은 이미 株主가 納入한 株式金額의 一部를 現金 또는 現物로 各株主에게 返還하여 資本金을 減少시키는 方法인데 이 方法이 典型的이고 實質的인 減資이며 會社의 事業이 縮少되는 등의 경우에 會社의 資金에 過剩이 생긴때에 行한다.

(例示)

一株當 1,000 원 資本금 10,000,000 원의 會社가 2,500,000 원의 減資를 行하여 株主 250 원의 現金의 還給이 있었다고 한다면

(借) 資本金 2,500,000 (貸) 現金 2,500,000 減資後의 資本金은 7,500,000 원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株當 260 원의 現金을 還給하였다고 한다면

(借) 資本金 2,500,000 (貸) 現金 2,600,000 積立金 100,000

으로되어 100,000 원의 減資에 의한 超過給이 생긴다. 이와같은 超過還給은 積立金이 配當된 것이나同一하므로 株主에 대해서는 甲配稅가 課稅된다.

그러나 法人에 대하여는 課稅問題가 發生하지 않는데 그 理由는 還給으로 流出된 還給超過額은 既稅에 法人稅가 課稅된 獲得分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에 現物에 의한 還給超過額이 있을 때에는 株主에 대한 配當稅 외에 帳簿價額과 時價額과의 差額은 法人の 益金에 加算하게 된다. 理由는 低價로 株主에게 現物로서 還給하였기 때문이다.

2. 株式數의 減少에 의한 減資

株式數가 減少에 의한 減資方法에는 株式的 消却과 併合의 두가지 方法이 있다. 前者는 會社가 特定의 自己 株式을 取得하여 이를 消滅시키는 것을 말한다.

株式的 消却은 資本減少의 경우와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써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간에 株式消却에 있어서는 그 消却될 株式的 取得價額이 株金額보다 高額일 때에는 超過還給에 發生하고 反對로 低額일 때에는 減資差益 (利益消却의 경

우에는 利益消却益)이 發生한다.

株式 併合은 數個의 株式을 併合하여 그보다 少數의 株式으로 만들고 併合된 株式數만큼 資本金을 減少시키는 減資方法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端○의 處理등으로 減資差益이 생기는 수가 있다.

또한 減資方法에는 有償減資와 無償減資의 方法이 있음은 上述한바이다. 減資에 있어서 減資額과 同額의 金錢을 株主에게 還給하는 경우에는 減資差益이 發生하지 아니하거나 無償減資의 경우에는 資本만 減少할 뿐 會社의 資產은 減少되지 않음으로 減資額에相當하는 減資差益이 發生하고 有償減資의 경우에도 減資額보다도 還給額이 적을 때에는 그 差額은 減資差益이 된다.

減資差益에 대하여는 現行 稅法上 益金不算入으로 列舉하고 있어 法人에 대한 課稅問題는 發生하지 아니하나 減資에 있어서 株式金額보다 超過된 還給益은 配當에 該當하므로 配當稅가 課稅된다는 課稅關係를 알아 보았다. 따라서 資本의 減少에 關한 稅務經營 對策은 以上的 稅務取扱을 檢討한 다음 計劃에 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完)

